

문서번호	사회적경제과-10692
결재일자	2014.11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마을만들기지원담당	사회적경제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서자경	임장식	이승복	김석진	김병환	11/24 김영배
협 조					

-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영성을 위한 -
『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』 재위탁 계획

2014 . 11.

성 북 구
(사 회 적 경 제 과)

-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영성을 위한 -
『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』 재위탁 계획

우리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통합센터 구축과,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.

I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내지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」 제27조(위탁관리 및 운영)

II 기본 방향
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 제고
-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
- 마을만들기 분야 및 사회적경제 분야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-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해도, 운영의 책임성, 지역사회 관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

Ⅲ

추진 개요

- 선정방식 :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
- 위탁기간 : [2015.1.1. ~ 2017.12.31.\(3년\)](#)
- 신청자격 ;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 및 비전을 고려한 사회적경제가치와 마을순환경경제 실현을 위한 법인(단체) 우선 고려

□ 추진절차

공개 모집 공고	신청서 접수	선정위원회 심사	수탁기관 선정 및 통보	위·수탁 협약체결
공고 15일 (*재공고 5일)	2일간 (*추가접수 2일)	운영위원으로 구성	7일이내 통보	협약의 이행보 증

□ 심사항목 및 배점 : 5개 분야 12개 평가항목, 총점 100점

- 수탁법인(단체)의 적격성 및 실적 (2항목 / 10점)
- 사업계획(시설운영)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(4항목 / 40점)
-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(2항목 / 15점)
- 사회적가치 및 마을 순순환경제 노력 (3항목 / 30점)
- 수탁법인(단체)의 재무상태 (1항목 / 5점)

□ 선정방법 : 심사결과 최고 고득점 법인(단체) 선정

- 1개 이하 법인(단체) 접수 시 재(연장)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
- 재(연장)공고 후 1개 법인(단체) 접수 시 선정심사 하한점수제 적용

□ 위수탁협약 체결 : 협약시 위수탁 조건 등 상호 협의

- 통합센터구축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 등 사전 협의(접수 시 안내)
- 일시연장(1회/90일한도)에 대한 협의

IV

추진배경

□ 기존 수탁기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

- 수탁기관 : (사)나눔과 미래(이사장 : 송경용)
- 위탁기간 : 2012. 1. 1 ~ 2014. 12. 31(3년)

□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구축 계획

-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구의회 상정 : 2014. 11월
- 마을만들기 지원센터+사회적기업허브센터+사회적경제지원단

□ 통합센터 구축 이전 기존 수탁기관 일시연장(90일) 여부 타진

- 기존 수탁기관의 「일시연장 불가」 의사 확인

⇒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종료(2014.12.31.) 시점과 통합센터 구축 추진 시점(2015.1.1. 조례공포 이후 위탁 추진)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으며, 기존 수탁기관의 일시연장 의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사무의 공백 없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

※ 용어의 구분(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)

- ① 재위탁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
- ② 재계약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
- ③ 일시연장 :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

IV

세부추진계획

□ 위탁 사무 및 시설내용

- 민간위탁 대상 사무 :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6조
 - 마을만들기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·보고
 -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 -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·지원,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
 - 마을만들기 교육, 연수, 박람회, 세미나, 사례현장 견학 지원
 -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, 활동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
 -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·전파
 -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민간위탁 대상 시설 :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
 - 위치 : 성북구 종암로 25길 29(종암동 80-8)內 3층(사무실일부)
- 예산의 지원
 -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, 수탁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성실히 운영

□ 추진일정

-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모집공고 | ----- | 2014. 11. 24 ~ 12. 9(15일) |
| ○ 신청서 접수 | ----- | 2014. 12. 10 ~ 12. 11(2일) |
| - 재공고 | ----- | 2014. 12. 12 ~ 12. 17(5일) |
| - 추가접수 | ----- | 2014. 12. 18 ~ 12. 19(2일) |
| ○ 신청단체 심사 | ----- | 2014. 12. 23(화) |
| ○ 수탁자 결정통보 | ----- | 2014. 12. 26(금) |
| ○ 위·수탁협약체결 | ----- | 2014. 12. 29(월) |
| ○ 사무인수인계 | ----- | 2014. 12. 31(수) |

※ 1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연장공고 및 추가 접수 실시하며, 연장공고 이후에도 접수 기관이 없는 경우는 위탁 계획 전면 재검토, 단일기관 접수할 경우는 하한 접수제로 선정 심사 추진

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수탁기관 공개모집

○ 공고 사항

- 위탁사업명, 위탁사업내용, 위탁기간, 응모자격 및 위탁조건
- 제안서(신청서) 및 접수 관련사항, 구비서류 등 제안서 제출기간
-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 등

○ 공고기간 : 최소 15일 이상(재공고 시 5일 이상)

○ 신청(접수)기간 : 2일(추가접수 시 동일)

□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

○ 심사위원 :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으로 구성

○ 개최개요

- 일 시 : 2014. 12. 23 14:00 ~ 종료시까지
- 장 소 :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
- 참 석 자 : 15명(운영위원)
- 주요내용 : 수탁기관 선정 심사
- 평가원칙
 -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심사위원의 최고 득점 단체 선정
 - 신청 자료에 의하여 서면심사 및 위원 상호 토의로 평가
 - 신청접수순으로 서면심사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 신청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함.(사전통보)

- 평가항목

-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(조례 제 27조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)
- 사업계획(사업 및 시설)의 적정성(실행가능성, 참신성) 및 수행능력
- 지역사회와의 관계(지역 또는 단체 협력성)
- 지역사회 기여도(사회봉사실적, 외부기관 평가 포상)
- 시설운영의 책임성(수탁기관의 재무상태)
-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(구정 정책과 마을만들기의 비전 반영)

- 결정방법

- 심사평가 결과 최고득점을 얻은 단체 또는 법인 선정
(심사위원 점수 합산 / 참석위원=평균득점의 최고득점단체로 결정)
-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기관의 적격성과 실적, 수탁법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,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,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 **【붙임 4 평가표 참조】**

□ 수탁기관 선정

○ 신청 자격

-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
-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-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·단체
- 정치적,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는 제외

○ 선정기준

-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
- 시설운영의 책임성 및 공신력

-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사실
- 사업계획(사업 및 시설)의 적정성(실행가능성, 참신성) 및 수행능력
-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(사회봉사실적, 외부기관 평가 포상)
- 사회적 가치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
- 사회적경제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배점 항목 부여
- 마을만들기사업 및 사회적경제분야 관련 수행능력 여부 검토
- 마을만들기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에 대한 우선 고려

※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은 평가항목에서 제외

○ 선정방법

- 공개모집을 통한 2개 기관 이상 접수 시 심사를 원칙
 - 연장공고 및 추가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관이 신청하였을 경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
-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구청장이 결정

○ 제출서류

-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 【붙임 1】
-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【붙임2】
- 수탁사무신청 법인·단체 현황 【붙임3】
- 법인등기부등본·법인인감증명서 : 최근 1개월 이내 소인
 - ※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
- 법인·단체의 정관 / 대표자 이력서 / 2013년도 결산서

○ 모집공고 : 2014. 11.24 ~ 12. 9(15일간)

- 게시장소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공 고 안 : 【붙임 6】

- 신청서 접수 : 2014. 12. 10 ~ 12. 11(2일간)
 - 장 소 : 성북구 사회적경제과(우편접수 불가 - 방문 접수)
 - 수탁자선정 : 2014. 12. 23
 - 선정심사위원회 개최
 - 심사결과 발표 : 2014. 12. 26(선정수탁자에게 개별 통보)
 - 협약체결 : 2014. 12. 29(협약서는 본 계획과 별도로 확정)
 - 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(3년)
- ※ 협약 시 통합지원센터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도 협약변경(해지) 및 위탁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일시연장(1회/90일) 가능토록 명시

- 붙임 1) 성북구 사무 수탁신청서 1부.
- 2)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.
- 3) 수탁사무 신청기관 현황 1부.
- 4) 수탁법인(단체) 심사 평가표 1부.
- 5) 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 1부,
- 6) 모집공고(안)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성북구 사무 수탁 신청서

사 무 명	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		
기관·단체	명 칭		
	주 소		
	대표자		전화번호
법인·단체명			
기구(직제)	(필요시:첨부)		
인 력	명(임원	명, 직원	명)
보유시설	※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		
보유장비	※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		
기타사항	(참고자료 많을시:첨부)		

성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14. . .

첨부 : ①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
 ②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
 ③ 수탁사무 신청 법인·단체 현황
 ④ 법인등기부등본·법인인감증명서 : 최근 1개월 이내 소인
 ※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
 ⑤ 법인·단체의 정관
 ⑥ 법인·단체 대표자 이력서
 ⑦ 법인·단체 2013년도 결산서

※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고 15권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【 신청인 】 법인·단체명 :
 대표자 성명 : (인)

성 북 구 청 장 귀하

【붙임 2】

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계획서

(법인·단체명 :)

1. 사업명 :

2. 사업목적 :

3. 사업개요

- -
- -

4. 연도별 사업 성과지표

성과지표	단위	2015년	2016년	2017년	비고

※ 마을만들기 사업 : 마을경관,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민 편익시설 설치, 골목길 담장허물기, 마을공동주차장 조성, 주택사이 정원조성사업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

※ 마을만들기 교육 : 마을학교 운영, 도시아카데미, 주민 교육, 연구사례발표, 토론회, 세미나, 워크숍 등 교육사업

※ 지역공동체 형성 : 마을알기, 마을축제, 동아리, 전시회, 마을신문, 소식지, 공동텃밭 등 공동체 형성사업

※ 지역경제 활성화 : 전통시장 활성화, 마을기업 등

5. 연도별 사업 로드맵

세부 로드맵 사업명	2015년				2016년				2017년				비고
	Q1	Q2	Q3	Q4	Q1	Q2	Q3	Q4	Q1	Q2	Q3	Q4	
(예시) 담장허물기사업 12개소	5%	10%	20%	30%	35%	40%	50%	60%	70%	80%	90%	100%	
	설계 용역	착공(발주)		준공 7개소	설계 용역	착공(발주)		준공 9개소	설계 용역	착공(발주)		준공 9개소	
· · ·													

※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특성에 맞추어 작성

6. 201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

(사업명, 일시, 장소, 참가인원,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)

○

·

·

○

·

·

※ 반드시 주민 참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, 추진방법, 추진일정 포함

7.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계획

(사업명, 일시, 장소, 협력방법, 참가인원,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)

○

·

·

○

·

·

※ 반드시 주민 참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, 추진방법, 추진일정 포함

○ 지역연계방안

지원방안	이름(단체명)	참여내용	현황
함께하는 지역 단체			<input type="checkbox"/> 참여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논의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예정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참여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논의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예정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참여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논의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예정

8.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활용 계획

(직원수, 직위구성, 업무분담 등 상세히 작성)

○

•

•

9.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확대 방안

(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, 의사결정방안, 사업홍보방안을 작성 등)

○

•

•

10. 연간 소요예산내역서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목	예산액	산출기초	비고
운영비	인 건 비	기 본 급			
	센터 수용비				
소 계					
사업비	마을만들기 주민사업				
	마을만들기 교육 및 연구				
	마을 공동체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				
	마을만들기 홍보활동 등				
	소 계				
총 계					

※사업비항의 사업명은 예시임.

【붙임 3】

수탁사무 신청기관 현황

1. 위탁 신청 법인·단체명 :
2. 대 표 자 :
3. 소 재 지 :
4. 설립목적 :
5. 설립일자 :
6. 구성원수 : 총 명(종사별로 표기)
7. 연 혁 :

년월일	연 혁

※ 내용이 많으면 별지 기록

8. 주요사업 실적(2012. 1월 ~ 2014. 11월현재)

구분	사업명	추진기간	주요사업내용	사업비(백만원)	유관기관 공동 협력사업 여부
					※ 단체기재

- ※ 구분 : 마을만들기사업(시설사업, 교육, 공동체 형성사업), 유사사업으로 기재
- ※ 정부·지자체 또는 민간기금 지원 사업실적 포함
- ※ 주요사업 내용에 지역 또는 기관단체와의 공동 추진실적 포함
- ※ 연도별로 작성

9.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(2012. 1 ~ 2014. 11월)

구분	추진기간	지역사회 기여 내용(사회봉사실적 등)	비고

- ※ 구분 :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
- ※ 언론보도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

10. 외부기관 평가 포상 실적(2012. 1 ~ 2014. 11월)

구분	수상일시	평가(포상)내용	기관명

- ※ 구분 :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
- ※ 관련자료 사본 첨부

11. 특기사항

-
-

12. 기타사항

-
-

【붙임 4】

수탁법인(단체) 심사 평가표

□ 단체(법인)명 : _____

평가분야	평가항목	총점 (100점)	평가기준	배점	점수 부여	
1. 수탁법인·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 (10점)	① 최근 3년간 법인·단체의 - 마을만들기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	5	5천만원 이상	5		
			2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		
			실적없음 또는 2천만원 미만	2		
	② 최근 2년간 정부, 지자체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점검 또는 평가 결과	5	5건미만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우수	5		
			5건이상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우수	4		
			점검실적이 없음(수탁실적 없음 포함)	3		
			5건미만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미흡	2		
			5건이상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미흡	1		
	소 계					
	2. 사업계획(시설 운영)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(40점)	① 사업의 이해도	10	탁월	10	
우수				8		
보통				6		
미흡				4		
부진				2		
②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		10	탁월	10		
			우수	8		
			보통	6		
			미흡	4		
			부진	2		
③ 조직운영 인력의 전문성 (센터장 및 직원)		10	탁월	10		
			우수	8		
			보통	6		
			미흡	4		
			부진	2		
④ 추진방법 구체성 - 추진전략, 접근방법, 추진일정 계획 수립 등		10	탁월	10		
			우수	8		
			보통	6		
			미흡	4		
			부진	2		
소 계						

평가분야	평가항목	총점 (100점)	평가기준	배점	점수 부여
3.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(15점)	① 최근 2년간 수탁법인·단체 및 종사자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- 사회봉사관련 실적, 외부기관 평가 포상 등 포함	5	탁월	5	
			보통	3	
			미흡	2	
	② 지역 기관·단체와의 협력성 - 사업계획 추진 상 지역 네트워크 활용	10	탁월(5개 이상 지역 및 단체)	10	
			우수(4개 이상 지역 및 단체)	8	
			보통(3개 이상 지역 및 단체)	6	
미흡(2개 이상 지역 및 단체)			4		
소 계				2	
4. 사회적가치 및 마을 순환경제 노력 (30점)	① 수탁법인·단체의 유형 - 사회적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	10	사회적경제관련 법인 또는 단체	10	
			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	6	
			기타 법인 또는 단체	2	
	② 지역주민 참여 노력 -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또는 참여 등 반영 계획 여부	10	탁월	10	
			우수	8	
			보통	6	
			미흡	4	
			부진	2	
	③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 -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구축 또는 참여 등 반영계획 여부	10	탁월	10	
			우수	8	
			보통	6	
			미흡	4	
부진			2		
소 계					
5. 수탁법인·단체의 재무상태 (5점)	수탁법인·단체의 재무상태 (자산보유금액)	5	5천만원 이상	5	
			5천만원 미만	3	
	소 계				
합 계					

총 점 : _____ (점)

심사위원: _____ (인)

성북구청장 귀하

【붙임 5】

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
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

① 수탁 법인·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(공신력) : 10 점

1-1. 최근 3년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유사사업수행 실적 5점

구 분	2억원 이상	1억원 이상	5천만원 이상	5천만원 미만	실적없음	비고
점 수	10	8	6	4	2	

※ 국·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총 투입액

※ 사업수행 금액은 마을만들기 사업(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설사업, 리더육성, 공동체 조성 등)의 투입금액

1-2. 최근 2년간 정부, 지자체로부터 점검 또는 평가 결과 5점

구 분	5건미만 지적 사항으로 처리 결과 우수	5건이상 지적 사항이나 처리 결과 우수	점검 실적이 없음(수탁실적 없음 포함)	5건미만 지적 사항이나 처리 결과 미흡	5건이상 지적 사항으로 처리 결과 미흡	비고
점 수	5	4	3	2	1	위탁기관 평가결과

※ 수탁실적이 있는 법인·단체의 경우는 위탁기관의 평가결과 의뢰 후 회신에 의거함.

② 사업계획(시설운영)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: 40 점

2-1. 사업의 이해도 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
※ 시설운영, 위탁업무 등 내용 숙지여부 반영

※ 사업의 실행 가능성, 효과성 등 표현

※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위원 주관 평가

2-2.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
- ※ 제출내역의 항목별 적정여부
- ※ 소요예산의 과다 계상 등 낭비요인 여부(심사위원 주관 평가)

2-3. 조직 운영 인력의 전문성(수탁시 고용인력)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기 준	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2년이상 3명이상 확보	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2년이상 2명이상 확보	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1년이상 1명이상 확보	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1년미만 1명이상 확보	경력 또는 전문 인력 미 확보

- ※ 제출된 종사자 명단에 표기된 사항 평가(관련 입증자료)
- ※ 유사분야 : 사회적경제분야 등 관련 사업 근무경력 인정

2-4. 추진방법 구체성(추진전략 및 접근방법, 추진일정 등)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
- ※ 추진 방법의 구체화
 - 사업계획의 내실성, 사업별 로드맵 작성여부, 사업시기 및 기간 적정 여부
 - 추진 체계도 구축상황(심사위원 주관 평가)

3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:

15점

3-1. 최근 2년간 수탁 법인·단체 및 종사자의 사회봉사관련 , 외부기관 평가 실적

5점

구 분	탁월	보통	미흡
점 수	5	3	2

- ※ 실적 건수가 많은 순으로 채점(종사자별 실적 누계)

3-2. 지역 기관 또는 단체 협력 사업계획 수립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기 준	5개 이상 지역, 기관 및 단체	네트워크 미구축			

- ※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관계 유지로 발전적 사업계획 제시 여부
- ※ 정량적 평가와 지역 연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한 주관적 평가 혼용

4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

30점

4-1. 수탁 법인 · 단체 유형

10점

구 분	사회적경제관련 법인 또는 단체	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	기타 법인 또는 단체
점 수	10	6	2

- ※ 규정 기초를 반영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수탁법인 또는 단체의 유형 고려

4-2. 지역주민 사업 노력(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)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
- ※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의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 적극 반영 -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위원 주관 평가

4-3.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(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 구축 등)

10점

구 분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진
점 수	10	8	6	4	2

- ※ 다양한 방법에 의한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(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) :심사위원 주관 평가

5 수탁법인·단체의 재무상태

5점

구 분	기본자산 5천만원 미만	기본자산 5천만원 이상
점 수	3	5

【붙임 6】

성북구 공고 제 - 호

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(안)

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4년 11 월 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현황

- 시설명 :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
- 위치 : 성북구 종암로 25길 29(종암동 80-8)내 3층
- 규모
 - 주요시설 : 사무실, 회의실 등
 - 사무 집기 등 관리 및 운영
 -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무 위탁

○ 주요시설

시설명	층 별	면적	시 설 내 역
성북구마을 만들기지원센터	3	약120㎡	성북구 종암로 25길 29 지하1층 지상6층건물 内, 3층 일부

○ 위탁사업 내용

- 마을만들기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·보고
-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-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·지원,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

- 마을만들기 교육, 연수, 박람회, 세미나, 사례현장 견학 지원
 -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, 활동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
 -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·전파
 -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※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 규정된 사업임.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문의

2. 모집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4. 11. 24 ~ 2014. 12. 9(15일간)
- 접수기간 : 2014. 12. 10 ~ 2014. 12. 11(2일간)
- 접수장소 :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(본관8층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
3. 신청자격요건

- 신청자격 :
 -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·단체로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·단체
 -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 - 정치적,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는 제외

4. 위탁기간 : 2015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(3년)

5. 위탁조건 : 통합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협약사항 상호 협의

6. 수탁자 선정방법

- 수탁자는 성북구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(선정심사위원회) 의결을 거쳐 결정함.
 - 신청접수순으로 신청자료에 의한 서면심사(필요시 대면 심사)
- 선정기준
 -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
 - 시설운영의 책임성 및 공신력

※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은 선정기준에서 제외

- 사업계획(사업 및 시설)의 적정성(실행가능성, 참신성) 및 수행능력
-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기여도(사회봉사실적, 외부기관 평가 포상)
- 심사일시 및 발표
 - 심사일시 : 2014. 12. 23(예정)
 - 선정발표 : 2014. 12. 26 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
 - ※ 위탁단체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함.
- 위·수탁 운영협약 체결 : 위탁자 선정 후 향후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
- 통합센터 구축 등 성북구 정책에 따라 위탁기간, 위탁사무 등 변경가능

7. 제출서류

- ①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
- ②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
- ③ 수탁사무 신청 법인·단체 현황
- ④ 법인등기부등본·법인인감증명서 : 최근 1개월 이내 소인

※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

- ⑤ 법인·단체의 정관
- ⑥ 법인·단체 대표자 이력서
- ⑦ 법인·단체 2013년도 결산서

※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여 15권 제출
 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

(서식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: <http://www.seongbuk.go.kr>)

8. 기타 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.
-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.
-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
- 1법인·단체만 신청했을 경우 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하며, 연장공고 후에도 1법인·단체만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함.
 -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·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.
 -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(☎ 02-2241-3912)로 문의하시기 바람.
-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